

의안번호	2213016
의 퇴 인	윤종오의원
회 답 일	2025.9.19.
추계번호	25D5119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1명, 비상임위원 1명을 증원하고, 위원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4억 4,600만원(연평균 2억 8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상임위원 인건비 등	209	209	214	219	224	1,074	215
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	21	21	21	21	21	105	21
임차료	54	33	36	35	38	195	39
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	36	0	0	36	0	72	14
합계	320	263	270	311	283	1,446	2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인권위원을 기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증원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의2 (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) 신설	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○	-
2	안 제5조의2 (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·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발생
 -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기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
 - 국회 및 대통령이 선출·지명할 위원 후보자(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7명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
- 추계에서는 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 및 임차료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
 - 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5년 기준 상임위원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2.4%를 적용하여 추정
- 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(안 제5조)

- 추계에서는 상임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 등을 추계함
 - 인건비는 2025년 예산 기준 상임위원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상승률 2.4%를 적용하여 추정
 - 기관부담금(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¹⁾을 적용하여 산출함
 -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(임차료 제외) 비율(11.6%)을 적용하여 산출
 -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1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년 7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²⁾를 곱하여 산출함

[표 2] 상임위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	163	167	171	175	180	857
기관부담금	21	22	23	23	24	113
기본경비	19	19	20	20	21	99
자산취득비	5	0	0	0	0	5
합계	209	209	214	219	224	1,07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비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(안 제5조)

- 비상임위원 1명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
 -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,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연간 전원위원회 24회, 소위원회 15회임
 - 비상임위원의 회의 1회당 참석수당은 안건검토비 35만원 및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55만원이며, 추계기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1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(2025. 7.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기관부담률(%)	13.066	13.130	13.194	13.286	13.380

2)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,981,000원임

[표 3] 비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회의참석수당	21	21	21	21	21	10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임차료

□ 증원되는 상임위원 1명, 비상임위원 1명의 사무실 확충 필요에 따른 임차료를 추계함

-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, 현재 상임위원 1인당 면적은 70m², 비상임위원 1인당 면적은 13m²이며, 개정안에 따른 사무실 확충 필요 면적은 83m²임
-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총 청사면적은 10,275.85m²이며, 임차보증금은 26억원, 연간 임차료는 40억 9,612만원이며, m²당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함

[표 4] 임차료(2025년 기준)

	임차료 (백만원)	청사면적 (m ²)	단가 (원/m ²)	추가 필요면적 (m ²)	추가재정소요 (백만원)
보증금	2,600	10,276	253,020	83	21
임차료 및 관리비	4,096		398,617		33

자료: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2년에 한 번씩 5%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5] 위원 증원에 따른 임차료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임차료	54	33	36	35	38	1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(안 제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, 위원 13명, 임기 3년이라는 점,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에 13명의 위원을 임명하고, 3년 후 13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
- 위원 13명에 대한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가 동시에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, 국회가 추천하는 9명 위원의 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가 9회, 대통령이 추천하는 4명 위원의 후보자추천위원회 4회 등 총 13회의 회의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안전검토비 20만원,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총 4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인권위원 13명 전원이 중도퇴임 없이 임기 3년을 마치고 3년후 13명의 위원에 대한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6]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회의참석수당	36	0	0	36	0	7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1명, 비상임위원 1명을 증원하고,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4억 4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상임위원 인건비 등	209	209	214	219	224	1,074
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	21	21	21	21	21	105
임차료	54	33	36	35	38	195
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	36	0	0	36	0	72
합계	320	263	270	311	283	1,44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2명의 인권위원 확충에 따른 임차료를 2025년 기준 위원 1인당 점유면적에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